## □ '23년 상반기 K-테스트베드 통합공모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

	기관명	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	담당자	이민형(031-929-0963) 이재일(031-929-0948)
	통합 공모 참여 여부	참여	지원 분야	단순실증 / 성능확인
- 1		· + 시기에이 튀기시키	이노니키스	

1. 참여기업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'테스트베드 운영 지침'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19조(실중인프라의 관리) ① 참여기업은 실증 과정에서 실증인프라를 훼 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- ② 참여기업은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제3자의 피해를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참여기업은 실증 과정에서 기술원의 정보·시설보안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참여기업은 실증 종료 15일 이내에 시설물 원상복구 계획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획서 승인 30일 이내에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⑤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4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주무부 서는 실증 기술(제품)의 철거 등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체결한 계약을 따른다.

##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제20조(비용부담) ①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의 세부 항목 및 산정 방법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지침 또는 참여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2조(K-테스트베드 로고 사용) ① K-테스트베드 해당분야의 실증확인서 및 기술·제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의 K-테스트베드 로고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브로슈어, 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 인쇄물
  - 2. 기업 홈페이지, E-카탈로그 등 온라인 홍보물
  - 3. 전시회 판넬 및 전시부스 등
  - ② 참여기업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노출 및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및 상품에 확인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.
  - ③ 참여기업이 제1항의 사용범위를 넘어 확인서 및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,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

	다. ④ 참여기업은 별표 2의 로고 사용 가이드에 따라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	제23조(기밀유지) 참여기업은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	제24조(제재) 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2년간 실증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 1. 제16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2. 참여기업이 제2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순실증확인서 및 기술・제품성능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.
	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. 기업 간의 법률분쟁으로 실증기술 등이 법원(하급심 포함)에서 기술·아이디어 도용,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. 그 밖에 발급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주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제재 사항을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참여기업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
	할 수 있다. ⑤ 주무부서는 제4항의 이의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⑥ 제2항에 따라 K-테스트베드 해당분야의 확인서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	<ol> <li>참여기업은 K-테스트베드 신청 전 실증인프라 시설 활용 현황</li> <li>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.</li> </ol>
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	
제출서류 목록	<ol> <li>참여신청서</li> <li>참여제안서</li> <li>기타(기관별 별도 제출 필요 서류 등)</li> </ol>
비고	- K-테스트베드 서식 활용